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1564
----------	------

2024. 02. 27.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2. 5. 임종국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4. 2. 7.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2024. 2. 27.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임종국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에 따라 북촌·서촌 등 한옥지역 내 한옥체험업 (한옥스테이) 적극 유도를 위한 한옥지원금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등록한옥을 한옥체험업(한옥스테이 포함)으로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임차인 포함) 신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의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함(안 제21조제2항제6호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가.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이 개정조례안은 한옥체험업으로 운영되는 한옥의 신축 및 수선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용자지원 한도를 현행 대비 10% 이내에서 상향토록 함으로써 한옥체험업의 적극유도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자, 임종국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서울시는 2022년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관광산업¹⁾을 활성화 하고 2027년 서울 방문 관광객 3,000만명 유치를 달성하고자 「서울 관광 활성화 계획(2022~2026)」을 수립²⁾한 이래,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선언³⁾ 이후에는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2023.8.11.)을 수립⁴⁾하고 곧이어 관광객 3천만 달성 전략을 담은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발표(2023.9.13.)⁵⁾하였음.
-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에서는 ‘부담없이 설 수 있고, 오래 머물고 싶은 숙박 환경 조성’이라는 전략 아래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전통·로컬 문화체험과 함께 새로운 숙박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옥스테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한옥스테이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한옥체험업’을 5년 이상 경영하는 등록한옥⁶⁾의 신축, 전면수선 또는 부분수선 시 현행 「서울특별

1) '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광객이 급감('19년 1,390만명 → '21년 74만명으로 95% 감소)하였음 (「서울 관광객 3천만 시대 연다...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도약」, 서울시, 2023.2.14.(화))

2) 관광체육국, 2022.9.20. 서울특별시시장 방침 제181호

3) “尹, 코로나 엔데믹 선언...3년4개월만에 일상회복”(2023.5.11. 동아닷컴)

4) 도시계획국, 2023.8.11. 서울특별시시장 방침 제108호

5) 2023.9.13.(수) 「서울시, 9.12(화) '3·3·7·7 관광시대' 열어줄 서울관광 미래비전 발표」

6)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을 등록한옥이라 하며, 서울시는 한옥건축양식 건축물도 ‘등록한옥’에 준하여 관리 중에 있음.

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보조 및 융자금 최대한도를 현행 대비 1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옥의 소유주로 하여금 건축물의 환경개선과 동시에 한옥체험업으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나. 한옥체험업(한옥스테이) 개념 및 현황

-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서, ‘한옥’⁷⁾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 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하며(검토보고서 붙임1. 참고), ’23년 7월 기준 서울시에는 총 228개소의 한옥체험업이 등록·운영 중에 있음⁸⁾(검토보고서 붙임2. 참고).
- 한편, ‘한옥스테이’는 한국관광공사가 2013년부터 한옥체험업 등록 가구 중 우수한옥을 선별하여 운영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⁹⁾, ’23년 8월 기준, 서울시에는 총 27개소의 한옥체험업 등록한옥이 한옥스테이 인증¹⁰⁾을 받아 운영 중에 있음(검토보고서 붙임2. 참고).

다. 지원사항 및 운영·관리방안

- 현행 조례 제21조에서는 등록한옥과 한옥건축양식에 대하여 신축, 전면수선 및 부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및 개정조례안에 따라 유형별 지원

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함.

8)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9)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 「한국관광공사, 우수한옥체험숙박업체(한옥스테이) 인증 제도 도입」(2013.4.1.)

10) <인증 신청 → 서류평가 → 1, 2차 현장평가 → 인증결정>의 절차로 진행됨.

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보전구역 외	
			외관	내부	외관	내부
한 옥	전면수선	보조 (한옥체험업)	90(108)	-	60(72)	-
		용자 (한옥체험업)	30(36)	60(72)	20(24)	40(48)
			33(39.6)	66(79.2)	22(26.4)	44(52.8)
	신축	보조 (한옥체험업)	120(144)	-	80(96)	-
		용자 (한옥체험업)	-	30(36)	-	20(24)
			-	33(39.6)	-	22(26.4)
	부분수선	보조 (한옥체험업)			20(24)	
		용자 (한옥체험업)			10(12)	
					11(13.2)	
	한옥건축 양식	전면수선	보조 (한옥체험업)	45	-	30
용자 (한옥체험업)			15	30	10	20
			16.5	33	11	22
신축		보조 (한옥체험업)	60	-	40	-
		용자 (한옥체험업)	-	15	-	10
			-	16.5	-	11
부분수선		보조 (한옥체험업)			10	
		용자 (한옥체험업)			5	
					5.5	

()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옥 전통양식을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등적으로 지원

- 서울시는 이 개정조례안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대상으로 신축 및 수선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한옥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사업자)과 “(가칭)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등록한 후, 5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협약 내용으로 하여 보조·용자금을 교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라.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한옥체험업으로 운영되는 한옥의 신축 및 수선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용자지원 한도를 현행 대비 10%이내에서 상향

토록 함으로써 한옥체험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서울시의 한옥 건축문화를 확대함과 동시에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지원되는 비용이 한옥의 신축 및 수선 등 한옥의 건축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공사 완료 후 한옥체험업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요건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한옥체험업으로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조 및 융자금의 최대한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① (생 략)</p> <p>② 보조 및 용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옥보전구역은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한옥을 부분수선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용자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③ ~ ⑥ (생 략)</p>	<p>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관광진흥법 시행령</u>」 <u>별표1 제4호에 따른 한옥체험업으로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조 및 용자금의 최대한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